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822호

「주택법」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 일부개정안

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21조의6”을 “「주택법」 제38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주택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”를 “「주택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16조”를 “법 제1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주택법」 제21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대상 및 범위) 이 기준은 「주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</p> <p>제9조(사업계획승인 신청) ①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증 받은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반영하고,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주택법」 제38조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대상 및 범위) ----- -- 「주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----- ----- ----- --.</p> <p>제9조(사업계획승인 신청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15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